

[별지 제11호 서식]

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등 신청서

서류  
필요  
대상자

필요  
서류  
첨부

신청하는  
본인

신청 대상자 <sup>1</sup> (발급대상자)		성 명	홍길동 (한자 : )		
		등록기준지 <sup>2</sup>	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동 87번지 <small>* 뒷면 작성 방법 5.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기준지를 기재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</small>		
		주민등록번호	001010 - 1234567		
신청내용	1.가족관계증명서	①일반( )통	②특정( )통 □부 □모 □배우자 □자녀(성명: )	③상세( / )통	
	2.기본증명서	①일반( )통	②특정 ①출생사망실종( )통 ②인자친생자관계정정( )통 ③친권·미성년후견(□전부 □현재)( )통 ④개명·성본변경( )통 ⑤국적취득·상실( )통 ⑥성별정정( )통	③상세( )통	
	3.혼인관계증명서	①일반( )통	②특정( )통 전(前)배우자성명: _____	③상세( )통	
	4.입양관계증명서	①일반( )통	②상세( )통	5.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①일반( )통 ②상세( )통	
	6.신고서류기재사항증명 ( )건	7.수리·불수리증명 ( )건			
	8.열람(신고서류) _____년 _____월 _____일 접수 _____ 신고				
	9.종전「호적법」에 따른 제적 ①등본( )통 ②초본( )통 ③열람( )건 본적: _____ 호주: _____ 대상자: _____ 의 _____ <small>* 특정증명서 교부 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선택하기 바랍니다. [□등록기준지 포함 □본(本) 포함]</small>				
	주민등록번호 공개신청 여부 (뒷부분 6자리)	□전부 공개 □신청 대상자 본인만 공개	공개 신청 사유	<input type="checkbox"/> 1. 신청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한 경우 <input type="checkbox"/> 2. 신청인이 신청대상자 본인 또는 본인의 부모, 양부모, 배우자, 자녀 및 그 대리인인 경우 <input type="checkbox"/> 3. 가족관계등록관서 출석 신청인이 재판상 필요를 소명 <input type="checkbox"/> 4. 공무원 등이 공용목적임을 소명한 경우	
	청구사유				
소명자료					
아포스티유 신청을 위한 증명서 발급정보 전송에 관한 동의 여부 <sup>3</sup>			증명서 발급정보 전송에 동의합니다. <input type="checkbox"/>		
신청인	성명	홍길순 (홍길순인)	주민등록번호 <sup>4</sup>	021001 - 1234567	
	주소	인천광역시 중구 운남서로1000	신청인 자격	홍길동 의 자녀 휴대전화번호 등 010-0000-0000	
위임인	성명		주민등록번호 <sup>4</sup>	-	
	위임을 받은 경우 위임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(위임장은 별도 첨부).				
20 26. 6. 22. 시(구)·읍·면장 귀하					
* 수수료	① 등록사항별 증명서 또는 제적 등본 1통당 1,000원, 제적초본 1통당 500원 ② 신고서류 열람·증명(신고서류기재사항증명, 수리·불수리 증명 등), 제적부 열람 1건당 200원 ③ 수수료 면제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수수료 면제(뒷면 참조)				
1. 공동상속처럼 신청대상이 여러 명일 때 신청 대상자란에 “별지와 같음”이라고 기재한 후 별지 서식을 이용하여 기재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신청서와 별지를 간인(서명)하여야 합니다. 2. 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대상자의 성명과 등록기준지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. 다만, 본인, 배우자, 직계혈족과 그 대리인의 경우와 뒷면 작성 방법 5.의 경우에는 대상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도 청구할 수 있으나, 우편으로 청구할 때에는 등록기준지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. 3. 아포스티유란 국내에서 발급한 문서를 다른 국가에 제출하여 증명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국제협약으로서, 주한 공사나 영사의 확인 없이 협약국가에서 공문서의 효력을 인정받습니다. 4. 신청인 또는 위임인이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번호(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)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. ※ 법 제117조: 제14조제1항·제2항·제7항, 제14조의2, 제14조의3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을 열람하거나 증명서를 교부받은 사람, 제42조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신고서류를 열람하거나 신고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교부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.					